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Corporate Tax Statistics (OECD)

보고서 목적 : 전세계 법인세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BEPS 관련 자료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하여 OECD에서 발간

주요 이슈*

- Corporate tax revenues
-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Tax incentiv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Anonymized and aggregated Country-by-Country Reports statistics**
-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 **Interest limitation rules**

1. Anonymized and aggregated Country-by-Country Report (CbCR) statistics**

(**)26개 국가(Tax Jurisdiction) 소재 약 4,000개 다국적기업이 제출한 2016년 CbCR 자료에 근거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15 Septem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 **CbCR 목적**

- OECD/G20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과세당국에게 제출. 적용대상은 연간 연결 매출액 1 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의 연결 최상위지배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매출액, 영업이익, 세금납부, 임직원수 등 정보를 글로벌 공통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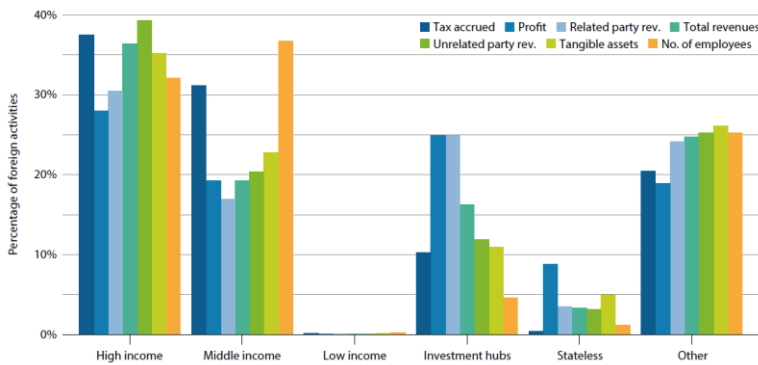
■ **한계**

- 과세위험, BEPS 존재 유무에 대한 확정적 근거가 아닌 High Level 분석을 위한 자료
- 데이터가 과도하게 통합되어 세부적 현황 파악 불가 (예: 전체 특수관계 거래 금액은 파악 가능하나, 특수관계거래별 금액 파악 불가)
- 국가별 작성 기준 불일치 (예: 특수관계자간 배당에 대한 Double Counting 이슈 등)

■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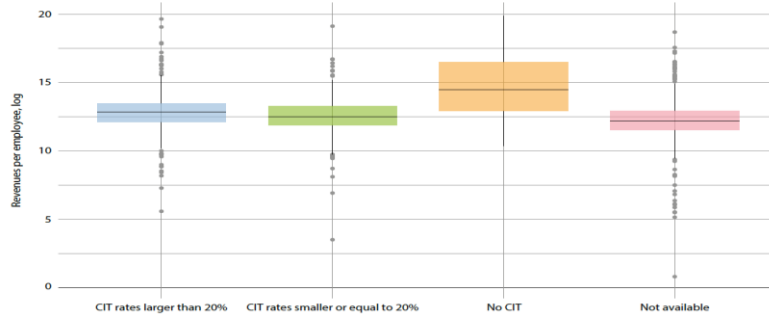
- 이익이 기록된 국가와 실제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국가가 상이한 추세가 발견됨, 다국적기업 Investment Hub 는 직원 수 및 자산의 규모와 비교하여 큰 이익을 창출하고, 이에 못 미치는 세액 발생

FIGURE 17: Jurisdiction groups' shares of foreign MNEs' activities



- 법인세율 0% 국가 및 Investment Hub 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직원 수 대비 높은 수준

FIGURE 18: CIT rates: average revenues per employee distribution



상기 그래프 내 색으로 표시된 Box 는 25th~75th percentile 을 의미, 해당 Box 내 검은선은 중위값을 의미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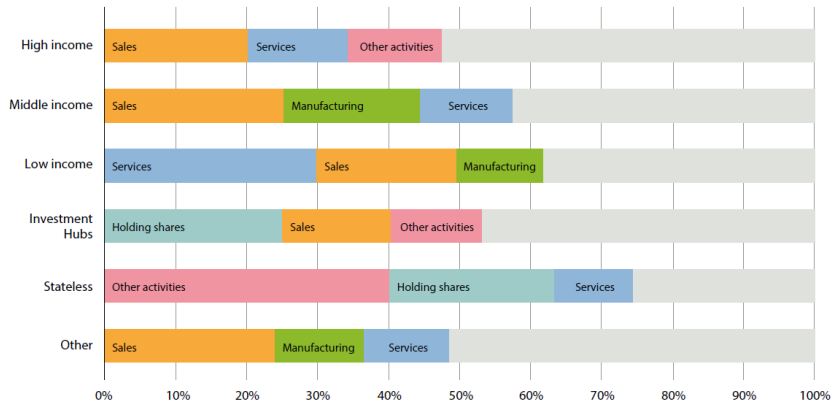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구성 비율이 상이

FIGURE 21: Top three business activities performed in jurisdiction groups



→ 결론 : 과세당국 입장 상기와 같은 CbCR 데이터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bCR 데이터상 BEPS 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사전적 위험분석 필요

2. Interest Limitation Rules

- BEPS Action 4 이자제한규정(Interest Limitation Rule)은 다국적 기업의 금융거래 비용공제를 통한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비용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범위를 기업 경제활동과 연동시켜 BEPS 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EPS Action 4 는 순이자비용 손금 산입을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
- 통계에 따르면 134 개 포괄적 이행체제 회원국 중 67 개 국가에서(2019 년 기준) 이자제한규정이 도입됨.
 -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43 개 국가 도입) : 부채 대비 자본 비율 또는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며,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보다 일반적, 비율은 0.3 : 1 (브라질)부터 6 : 1 (스위스)까지 다양함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Earning stripping rule, 33 개 국가 도입) : 이자비용 대비 EBITDA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 제한하며, EBITDA 가 아닌 EBIT 또는 Tax 목적상 총자산 가치(덴마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 EBITDA 기준 10%에서 30% 정도 사이 비율이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30% 수준.

<국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4 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2017. 12. 19. 신설, 2019. 1. 1. 부터 시행

→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국가별 이자제한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손금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OECD Tax Talks (2020년 7월 22일)

7월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 G20 재무장관들은 현존하는 차이점을 극복하고 2020년 내 글로벌 및 합의 기반 해결책에 도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두 Pillar의 진척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더불어 G20 재무장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투명성 기준 도입과 관련 국가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델(Model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을 통해 보여준 정보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진척상황을 환영한다고 밝힘.
- 2019년 기준 대략 100곳의 관할권에서 정보자동교환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4,700백만 EUR의 재무정보가 교환된 것에 비해 2019년 8,400백만 EUR 재무정보가 이루어져 많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음 보여줌. 또한 2018년 교환된 정보들의 자산은 약 4.9조 EUR이었던 반면, 2019년은 약 10조 EUR의 자산 정보를 교환하였음.

디지털세 경과

다자간 협의체 회원들은 합의 기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두 Pillar 모두에서 좋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COVID-19에도 불구하고 두 Pillar의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중
- 향후 몇 주 동안 다자간 협의체 의견 취합을 위해 각 Pillar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가 마무리될 예정
- 디지털세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 또한 준비중
- 각종 보고서는 2020년 10월 초 다자간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 및 완료될 예정

디지털세가 글로벌 세수에 미치는 전체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Pillar 1과 2의 결합된 효과는 글로벌 세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

- 디지털세의 설계 및 매개 변수에 따라 전체적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순세수입은 글로벌 법인세 수익의 최대 4% 또는 연간 1,000억 USD 일 것으로 추정

- Pillar 1 은 과세권 배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Pillar 2 는 전세계 법인세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및 무형자산에 편향된 사업은 두 Pillar 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적어도 COVID-19 사태는 단기 및 중기 적으로 전반적인 수익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COVID-19 사태는 디지털화 추세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Pillar 1 의 Automated Digital Service("ADS") 중요성을 높일 수 있음

최신 뉴스기사

독일 재무, "연내 OECD서 디지털세 기본개념 국제적 합의" 전망 (조세일보, 2020.08.27)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27404834.html>

- 오스트리아 일간지 비너 자이퉁에 따르면 솔츠 장관은 25 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독일어권 국가 장관들과 이틀 동안 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현재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 이날 솔츠 장관의 발언은 OECD 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논의가 연기되고 지난 6 월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연말 최종안 도출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 프랑스가 작년 7 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하자 미국은 24 억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갈등 끝에 지난 1 월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OECD 를 통해 디지털세의 과세원칙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6 월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 이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는 정의의 문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올해 거대 디지털기업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디지털稅 논의중단→과세권 전쟁? (일간NTN, 2020.8.10.)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03>

- 미 재무부, 10 월 매듭 예고된 BEPS 합의 논의 6 월 하순 중단 선언 한성수, "합의 없으면 과세권 전쟁 불가피...韓기업 BEPS 대비 시급"
- 코로나 19 로 지구촌 전역에서 경제성과가 급락한 가운데,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많아 '사용지 과세(User-based taxation)' 압박을 받아온 미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세금 논의에서 이탈했다.코로나 19 사태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오는 10 월까지는 과세방안 초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논의중단 발표로 전 세계가 향후 자국 과세권 확보를 위해 파상적인 세금전쟁을 치르는 급박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6 월 중순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난항을 거듭해온 디지털회사관련 과세방안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감안해 고정사업장 없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회사에 대한 과세논의를 중단한다'고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2. 국제조세/관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판례 : 조심2019서4334, 2020.07.10

- 제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5 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 주문 : 세무서장이 2019.9.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정상가격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되, 2017 사업연도 ○○○위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제품 위탁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국제조세 최신 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2020.06.30

-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반환받을 금액)하고 같은 법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세 최신 판례 : 조심2020관0064, 2020.08.03

- 결정요지 : 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 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세 최신 판례 : 조심2020관0052, 2020.07.14

- 결정요지 :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자율안내 전까지 청구법인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최신 뉴스기사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하자마자 다국적기업·역외탈세 '정조준' (한국세정신문, 2020.08.27)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043>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으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반면,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식품, 세무조사 추징금 236억... 자기자본의 5.4% (일간NTN, 2020.8.10.)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05>

- 서울지방국세청, 타기업대비 높은 브랜드 사용료 지불로 세금 탈루 의심 회사 "고지금액 납부 후 쟁점항목 검토하여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예정

-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36 억 2016 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측은 “고지금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9 년 9 월 풀무원식품이 ‘풀무원’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매출액의 3%를 지주사에 지급해오고 있는 것과 관련,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France: Annual transfer pricing return, filing deadline postponed (COVID-19)

COVID-19 으로 인한 프랑스 연례 이전가격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8/tnf-france-annual-transfer-pricing-return-filing-deadline-postponed-covid-19.html>

프랑스 세무당국은 COVID-19 에 대한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연례 이전가격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연례 이전가격신고서(Form 2257-SD)는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2019 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전가격신고서는 아래의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회계연도가 2019 년 12 월 31 일, 2020 년 1 월 31 일 및 2020 년 2 월 29 일에 종료되는 회사의 경우 2020 년 12 월 31 일
- 회계연도가 2020 년 3 월 31 일에 종료되는 회사의 경우 2021 년 1 월 31 일

● 이전가격 문서화 및 보고 의무

프랑스 법률은 이전가격 문서화 및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유형의 보고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보고서(CbCr) (프랑스 일반세법 223조 quinquies C)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프랑스 조세 절차 가이드 L.13 AA조 및 L. 13 AB조)
- 연례 이전가격신고서 Form 2257-SD(“이전가격보고서에 대한 요약 서식”) (프랑스 일반세법 223조 quinquies B)

● 연례 이전가격신고서(Form 2257-SD)

연간 총 매출액 5 천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또는 총 자산가액이 5 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법인,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그러한 법인에 의해 종속되는 법인은 이전가격보고서에 보편적으로 기술되는 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는 양식의 신고서인 Form 2257-SD 를 프랑스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2257-SD 에는 프랑스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수록되며, 거래유형 별로 10 만 유로를 초과하는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Form 2257-SD 제출 대상 납세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U: Retroactive intercompany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and customs valuation of imported good

이전가격 소급적용 시 수입제품의 관세 가치 평가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8/tnf-eu-retroactive-intercompany-transfer-pricing-adjustments-and-customs-valuation-of-imported-goods.html>

COVID-19 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과 제품 수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비경상적으로 저하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고려한 이전가격 소급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소급 조정은 정상가격범위 내 영업이익율 또는 총원가 대비 Markup 으로 보상을 받는 사업 보조자 성격의 그룹 내 판매법인, 제조법인, 서비스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전가격 소급 조정은 EU 수입제품의 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이전가격 및 EU 관세 평가

EU 관세법에 따라 동일 그룹 내 법인간의 거래는 특수관계거래로 취급됩니다. EU 관세당국은 신고된 수입품 가격이 해당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당국은 특수관계판매거래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로부터 특수관계판매거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관세 신고가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이 아닌 대체 관세 평가 방법 (Alternative Value Method)을 적용한 관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관세 수입 신고 가격이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한 관세 납부액이 변동됩니다. EU 의 관련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조정 신고제(reconciliation program)를 통한 관세 신고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고제는 이전가격 조정을 반영한 최종 가격이 결정된 후

수입자로 하여금 세관에 기 제출한 예비 신고서에 대한 보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실무적으로 네덜란드 관세당국이 사용하는 전자신고시스템 (electronic declaration system)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상기 조정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자신고시스템은 예비 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된 달의 다음달 말일에 예비 신고서를 자동으로 마감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이전가격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네덜란드 소재 수입자들은 연간 공시 절차(annual disclosure process)를 통해 이전가격조정 내역을 보고하고 관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납세자는 네덜란드 관세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수입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가격 조정액을 수입가에 반영할지에 대한 해석을 회신 받아야 합니다.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C-529/16)

2017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소급 조정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전가격이 소급 조정될 경우 임시 이전가격을 관세 가격 평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불완전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 후에 조정 신고제를 적용 받거나, 대체 관세 평가 방법(Alternative Value Method)을 적용하여 관세평가를 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덜란드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조건으로 조정 전 이전가격을 관세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KPMG 제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말 이전가격 소급 조정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네덜란드 관세당국에서 관세평가 목적으로 조정 전 이전가격을 신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수입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관세 평가 방법 외 대체 관세 평가 방법(Alternative Value Method)의 적용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관세 가격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경우 수입자가 EU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하거나 고려 중인 회사는 상기에 언급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Russia: Tax audit guidelines, verifying reasonableness of expenses for intra-group services](#)

러시아: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그룹 내부 용역 비용의 합리성 검증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8/tnf-russia-tax-audit-guidelines-verifying-reasonableness-of-expenses-for-intra-group-services.html>

러시아 연방 과세당국은 그룹 내부 용역(Intra-group services)과 관련하여 수수료 청구 대상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침을 하위 과세당국에 전달하였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지침(Letter No. SHU-4-13/12599)은 그룹 내부 용역 수수료와 관련된 청구 대상 비용의 검증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하위 과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5 개 항목을 검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 동일한 용역에 대한 이중 청구가 존재하는지 여부
- 해당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상업적 지위 향상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또는 상업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청구한 비용이 주주활동 비용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거래의 실제 발생 비용과 정상가격에 대한 평가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투명하고 일관적인 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지 여부

● 지침 개요

납세자는 그룹 내부 용역에 대한 납세자의 입장을 이전가격보고서 (Local File)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Master File 의 구비 및 제출을 통해 표명할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정당성 및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은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는 내용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침은 용역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기능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유사한 용역을 비교가능한 조건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한 내역 또는 제공된 용역에 대한 상업적 및 경제적 효익에 대한 설명(“Benefits Test”)을 이전가격보고서에 기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납세자가 상술한 효익 등에 대한 내역과 마크업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해당 그룹 내부 용역 거래를 다국적 기업의 손익 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침은 간접 비용의 배부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KPMG 제언

해당 지침에 대한 공포는 그룹 내부 용역에 대하여 러시아 과세당국의 접근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가 더욱 복잡해지고 용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상세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해당 용역 계약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용역의 경제적 합리성과 비용의 중복 청구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Greece: APA rollback rules are expanded

**그리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소급기간의 확대 적용**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9/tnf-greece-apa-rollback-rules-are-expanded.html>

신규 제정된 법률 4714/2020 은 그리스의 APA 소급적용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기존 APA 조항(Article 22 of law 4174/2013)에 대한 개정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APA 소급적용 규칙과 관련된 OECD 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 Action 14 에 따른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2014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쌍방 또는 다자간 APA 신청 시 과거 사업연도의 거래내역이 신청서 상 거래내역과 동일하며 제척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류 중인 쌍방 또는 다자간 APA 신청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PA 소급적용에 따른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APA 승인에 대해 납세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적시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